

□ 변경 대비표

변경시행일 : 2012년 12월 31일

신한BNPPBEST법인용MMFGS-1호

투자설명서 변경 내역

- (1) 기재사항 변경
 - 1 퇴직연금전용 종류 수익증권 추가
 - 2 자본시장 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3 자구 수정
 - 4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항목	정정전	정정후
1. 퇴직연금전용 종류 수익증권 추가: 제1부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제 1부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신한 BNPP BEST 법인용 MMF GS-1호 종류 C1 수익증권 종류 A-u2 수익증권 종류 직판 수익증권 <신설>	제 1부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신한 BNPP BEST 법인용 MMF GS-1호 종류 C1 수익증권 종류 A-u2 수익증권 종류 직판 수익증권 종류 C-P 수익증권
1. 퇴직연금전용 종류 수익증권 추가: 제2부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제 2부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신한 BNPP BEST 법인용 MMF GS-1호 종류 C1 수익증권 종류 A-u2 수익증권 종류 직판 수익증권 <신설>	제 2부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신한 BNPP BEST 법인용 MMF GS-1호 종류 C1 수익증권 종류 A-u2 수익증권 종류 직판 수익증권 종류 C-P 수익증권
1. 퇴직연금전용 종류 수익증권 추가: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및 나. 종류형 구조 종류 C1 수익증권 종류 A-u2 수익증권 종류 직판 수익증권 <신설>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및 나. 종류형 구조 종류 C1 수익증권 종류 A-u2 수익증권 종류 직판 수익증권 종류 C-P 수익증권
1. 퇴직연금전용 종류 수익증권 추가: 제2부 11. 매입 및 환매 기준	제2부 11. 매입 및 환매 기준 가. 매입 및 다. 환매 종류 C1 수익증권 종류 A-u2 수익증권 종류 직판 수익증권 <신설>	제2부 11. 매입 및 환매 기준 가. 매입 및 다. 환매 종류 C1 수익증권 종류 A-u2 수익증권 종류 직판 수익증권 종류 C-P 수익증권
1. 퇴직연금전용 종류 수익증권 추가: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 나.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C1 수익증권 종류 A-u2 수익증권 종류 직판 수익증권 <신설>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 나.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C1 수익증권 종류 A-u2 수익증권 종류 직판 수익증권 종류 C-P 수익증권
2. 자본시장법 및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 (www.shbnppam.com) ·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의 본 ·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유용인력의 변경 2. ~ 10. <생략>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 (www.shbnppam.com) ·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의 본 ·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유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유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 10. <현행과 같음>
2. 자본시장법 및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판매회사를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하 생략>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의 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하 생략>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 또는 한국에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하 현행과 같음>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판매회사 또는 한국에탁결제원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하 현행과 같음>
3. 자구 수정: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환매조건부매도
4.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제2부 5. 투자유용인력에 관한 사항	제2부 5. 투자유용인력에 관한 사항	제2부 5. 투자유용인력에 관한 사항 - 기준일(2012.11.30.)

<p>4.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p>	<p>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 내용 라. 운용자산 규모</p>	<p>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 내용 라. 운용자산 규모 최근현황갱신 (기준일: 2012년 3월 31일, 2012년 11월 30일)</p>
--	---	--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내역

- (1) 기재사항 변경
- 1 퇴직연금전용 종류 수익증권 추가
- 2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항목	정정전	정정후
<p>1. 퇴직연금전용 종류 수익증권 추가: 제1부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p>	<p>제 1부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신한 BNPP BEST 법인용 MMF GS-1호 종류 C1 수익증권 종류 A-u2 수익증권 종류 직판 수익증권 <신설></p>	<p>제 1부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신한 BNPP BEST 법인용 MMF GS-1호 종류 C1 수익증권 종류 A-u2 수익증권 종류 직판 수익증권 종류 C-P 수익증권</p>
<p>1. 퇴직연금전용 종류 수익증권 추가: 제3부 1.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p>	<p>제3부 1.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 나.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C1 수익증권 종류 A-u2 수익증권 종류 직판 수익증권 <신설></p>	<p>제3부 1.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 나.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C1 수익증권 종류 A-u2 수익증권 종류 직판 수익증권 종류 C-P 수익증권</p>
<p>1. 퇴직연금전용 종류 수익증권 추가: 제3부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 및 환매 절차</p>	<p>제3부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 및 환매 절차 (2) 매입 및 환매 절차 종류 C1 수익증권 종류 A-u2 수익증권 종류 직판 수익증권 <신설></p>	<p>제3부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 및 환매 절차 (2) 매입 및 환매 절차 종류 C1 수익증권 종류 A-u2 수익증권 종류 직판 수익증권 종류 C-P 수익증권</p>
<p>2.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제2부 5.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p>	<p>제2부 6.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p>	<p>제2부 6.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 기준일(2012.11.30.)</p>

집합투자규약 변경 내역

- (1) 기재사항 변경
 1 퇴직연금전용 종류 수익증권 추가
 2 자본시장 법 및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3 자구 수정

항목	정정전	정정후
1. 퇴직연금전용 종류 수익증권 추가: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① ~ ② <생략>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류 C1 수익증권 종류 A-u2 수익증권 종류 직판 수익증권 <신설>	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류 C1 수익증권 종류 A-u2 수익증권 종류 직판 수익증권 종류 C-P 수익증권 - 투자자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전용 수익증권 - 판매수수료 부과여부: 해당사항 없음
1. 퇴직연금전용 종류 수익증권 추가: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제10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 종류 C1 수익증권 2. 종류 A-u2 수익증권 3. 종류 직판 수익증권 <신설> ②~⑤ <생략>	제10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 종류 C1 수익증권 2. 종류 A-u2 수익증권 3. 종류 직판 수익증권 4. 종류 C-P 수익증권
1. 퇴직연금전용 종류 수익증권 추가: 제39조(보수)	제39조 (보수)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종류형 투자신탁인 경우에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보수율은 종류별로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1. ~ 3. <생략> <신설>	제39조 (보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종류형 투자신탁인 경우에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보수율은 종류별로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1. ~ 3. <현행과 같음> 6. 종류 C-P 수익증권 A.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60] B.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60] C.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20]
1. 퇴직연금전용 종류 수익증권 추가: 제40조(판매수수료)	제40조 (판매수수료) ①~② <생략> ③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다음 각호의 종류별로 선취판매수수료를 수익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1. 종류 A-u2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100분의 0.98 이내 2. 종류 C1 수익증권, 종류 직판 수익증권, <신설> : 없음 ④ <생략>	제40조 (판매수수료) ①~② <생략> ③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다음 각호의 종류별로 선취판매수수료를 수익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1. 종류 A-u2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100분의 0.98 이내 2. 종류 C1 수익증권, 종류 직판 수익증권, 종류 C-P 수익증권 : 없음 ④ <현행과 같음>
1. 퇴직연금전용 종류 수익증권 추가: 제41조(환매수수료)	제41조 (환매수수료) ① <생략> ② 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종류 C1 수익증권, 종류 직판 수익증권, <신설> : 없음 2. 종류 A-u2 수익증권: 3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③ <생략>	제41조 (환매수수료) ① <생략> ② 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종류 C1 수익증권, 종류 직판 수익증권, 종류 C-P 수익증권 : 없음 2. 종류 A-u2 수익증권: 3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③ <현행과 같음>

<p>2. 자본시장법 및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50조 (공시 및 보고서 등)</p>	<p>제50조 (공시 및 보고서 등) ① <생략>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투자유용인력의 변경 2. ~ 5. <생략> ③ ~ ⑥ <생략> 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제3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 ~ ⑩ <생략></p>	<p>제50조 (공시 및 보고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투자유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유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 5.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략> 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제3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 ~ ⑩ <현행과 같음></p>
<p>3. 자구수정: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p>	<p>제17조 (투자대상자산 등) ① 1. ~ 6. <생략> 7.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음) 8. <생략> ② <생략></p>	<p>제17조 (투자대상자산 등) ① 1. ~ 6. <생략> 7. 환매조건부 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음) 8. <생략> ② <생략></p>
<p>3. 자구수정: 제43조(신탁계약의 변경)</p>	<p>제43조 (신탁계약의 변경)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37조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및 제44조 제3항 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②~⑤ <생략></p>	<p>제43조 (신탁계약의 변경)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37조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제44조 제3항 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②~⑤ <현행과 같음></p>